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024. 5. 16.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목 차

I. 결산검사 의견서	1
II. 결산검사 결과 요약	3
1. 세입·세출결산	3
2. 기금의 결산	5
3. 재무제표	6
4. 채권·채무결산	6
5. 자산의 결산	7
6. 금고의 결산	8
7. 성과보고서	9
8. 성인지 결산	9
III. 개선 및 권고사항	10
1.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10
2.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5
3. 기금에 관한 사항	56
4.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62
5.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63
6.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70
7. 성인지 결산에 관한 사항	73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I. 결산검사 의견서

부산광역시장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5월 2일부터 2024년 5월 16일까지(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의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부산광역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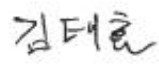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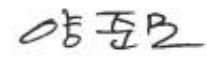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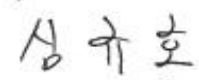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도 함께 확인하여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담당자 면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부산광역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공유재산·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정 채 숙	
위원	김 태 효	
위원	양 준 모	
위원	윤 현 석	
위원	조 진 석	
위원	배 병 훈	
위원	심 규 호	
위원	김 경 열	
위원	박 금 주	
위원	김 재 현	
위원	이 진 군	
위원	한 승 훈	

Ⅱ. 결산검사 결과 요약

1.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16,754,861	17,023,420	15,880,978	487,748 (353)	62,954	591,740
일반회계	13,126,532	13,407,033	12,494,905	322,747 (353)	62,720	526,661
공 기 업 특별회계	929,502	906,890	744,172	139,205		23,513
기 타 특별회계	2,698,827	2,709,497	2,641,901	25,796	234	41,566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로 별도 표시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나. 세입결산

2023회계연도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계	16,754,861	17,340,580	543,985 (3.1)	17,023,420 (98.2)	52,816 (0.3)	264,344 (1.5)
일반회계	13,126,532	13,661,439	540,563 (4.0)	13,407,033 (98.1)	51,970 (0.4)	202,436 (1.5)
공 기 업 특별회계	929,502	918,692	2,306 (0.3)	906,890 (98.7)	471 (0.1)	11,331 (1.2)
기 타 특별회계	2,698,827	2,760,449	1,116 (0.0)	2,709,497 (98.2)	375 (0.0)	50,577 (1.8)

※ ()내서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

다. 세출결산

2023회계연도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6,134,710	16,754,861	15,880,978 (94.8)	488,101 (2.9)	68,460 (△5,506)	317,322 (1.9)
일반회계	12,738,920	13,126,532	12,494,905 (95.2)	323,100 (2.5)	68,108 (△5,388)	240,419 (1.8)
공 기 업 특별회계	784,483	929,502	744,172 (80.1)	139,205 (15.0)		46,125 (5.0)
기 타 특별회계	2,611,307	2,698,827	2,641,901 (97.9)	25,796 (1.0)	352 (△118)	30,778 (1.1)

※ ()내서는 예산현액에 대한 비율이며, 보조금반납금()는 교부차액임.

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2023회계연도 회계별 세입·세출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 월 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 세 계 잉 여 금
계	17,023,420	15,880,978	1,142,442	487,748 (353)	62,954	591,740
일반회계	13,407,033	12,494,905	912,128	322,747 (353)	62,720	526,661
공 기 업 특별회계	906,890	744,172	162,718	139,205		23,513
기 타 특별회계	2,709,497	2,641,901	67,596	25,796	234	41,566

※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로 별도 표시

2. 기금의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 번	구 분 기금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1,073,768	△96,007	902,359	998,366	977,761
1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151,367	△66,970	571,745	638,715	84,397
2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1,330	△352	2,005	2,357	978
3	집 단 에 너 지 시 설 기 금	14,822	△9,472	1,528	11,000	5,350
4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51,997	△21,119	38,980	60,099	130,878
5	투 자 진 흥 기 금	145,747	△16,604	34,007	50,611	129,143
6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9,616	348	368	20	9,964
7	자 활 기 금	10,213	△14	371	385	10,199
8	재 해 구 호 기 금	13,384	20,409	47,125	26,716	33,793
9	식 품 진 흥 기 금	14,419	790	2,231	1,441	15,209
10	환 경 보 전 기 금	17,579	1,094	4,629	3,535	18,673
1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 민 지 원 기 금	1,158	59	3,435	3,376	1,217
12	재 난 관 리 기 금	31,415	17,841	48,863	31,022	49,256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88,732	11,111	22,108	10,997	199,843
14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 소 년 육 성 기 금	75,988	△9,102	3,855	12,957	66,886
15	문 화 진 흥 기 금	76,022	△10,081	1,749	11,830	65,941
16	체 육 진 흥 기 금	69,360	21,234	24,886	3,652	90,594
17	지 역 개 발 기 금	98,680	△37,394	92,259	129,653	61,286
18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1,939	2,059	2,059		3,998
19	고 향 사 랑 기 금 *		156	156		156

* 고향사랑기금 신설(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3.1.1. 시행)

3.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재정운영결과
2023년	48,949,909	4,864,747	44,085,162	13,371,502	13,878,089	△506,587
2022년	48,423,604	5,059,751	43,363,853	13,754,707	14,165,808	△411,101
증감	526,305	△195,004	721,309	△383,205	△287,719	△95,486

4. 채권·채무결산

가. 채권

2023회계연도 채권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합 계		89,698	23,403	19,355	93,746	3,573	90,173
일반회계		45,297	5,757	7,633	43,421	3,462	39,959
특별회계	소 계	18			18		18
	공기업특별회계	18			18		18
	기타특별회계						
기금	소 계	44,383	17,646	11,722	50,307	111	50,196
	중소기업육성	40,432	16,885	10,119	47,197		47,197
	자 할	385	140	10	515	110	405
	식 품 진 흥	3,566	621	1,593	2,595	1	2,594

* 당해연도말 현재액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나. 채무

2023회계연도 채무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B)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
		계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3,158,597	△20,423	408,087	428,510		3,138,174
지 방 채 증 권	2,296,506	△78,075	284,787	362,862		2,218,431
차 입 금	862,091	57,652	123,300	65,648		919,743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 당해연도말 현재액(D) = 전년도말 현재액(A) + 당해연도 증감액(B) + 조정액(C)

5. 자산의 결산

가. 공유재산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의 용도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용 도 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 가 액	감 소 액	
합 계		32,230,227	876,128	1,468,223	592,095	33,106,355
행정 재산	소 계	29,392,481	619,147	905,043	285,896	30,011,628
	공 용 재 산	11,286,253	79,087	190,732	111,645	11,365,340
	공 공 용 재 산	17,092,181	511,111	683,683	172,572	17,603,292
	기 업 용 재 산	941,395	28,980	30,628	1,648	970,375
	보 존 용 재 산	72,652	△31		△31	72,621
일 반 재 산		494,335	22,464	44,151	21,687	516,799
건설중인재산		2,343,411	234,517	519,029	284,512	2,577,928

나. 물품

2023회계연도 말 현재 물품의 취득·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점, 백만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당 해 연 도 말 보 유 액	
	수 량	금 액	취 득		처 분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4,566	137,034	420	6,657	△135	△3,868	285	2,789	4,851	139,823

※ 작성대상 물품 : 58종 정수물품(49종 정수물품 보유)

※ 미보유 정수물품 : 조연차, 살수차, 저속전기자동차, 가드레일청소차, 제설차,
칼슘살포차, 조명차, 도로보수차, 분무기탑재차 9종

6. 금고의 결산

2023회계연도 금고의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1)-(2)	수입액 (1)	지출액 (2)	
합계(A+B+C)	2,239,926	1,046,435	17,925,779	16,879,344	2,120,203
일반회계소계(A)	847,005	912,128	13,407,033	12,494,905	912,128
특별회계소계(B)	319,153	230,314	3,616,387	3,386,073	230,314
공 기 업	189,552	162,718	906,890	744,172	162,718
기 타	129,601	67,596	2,709,497	2,641,901	67,596
기 금 소 계 (C)	1,073,768	△96,007	902,359	998,366	977,761

7. 성과보고서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현 년 도 결 산 액	전 년 도 결 산 액	비 교 증 감
	개수	지표 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33	241	460	57	367	36	15,136,805	15,155,890	△19,085

※ '초과달성'이란 목표대비 130% 이상 달성, '달성'이란 100%이상 130% 미만 달성,
'미달성'이란 100% 미만의 달성도를 보인 경우로 구분

8. 성인지 결산

2023회계연도 성인지 대상 사업 회계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개 수 (개)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
계	174	620,705	613,657	98.9
일 반 회 계	170	605,795	600,170	99.1
기타특별회계	1	722	722	100.0
기 금	3	14,188	12,765	90.0

Ⅲ. 개선 및 권고사항

1.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1)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

가)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징 결정액	미 수 납액	비 율	징 결정액	미 수 납액	비 율	징 결정액	미 수 납액	비 율
지방세										
	보 통 세	4,767,283	64,058	1.3%	4,926,600	57,464	1.2%	4,781,177	50,769	1.1%
	목 적 세	560,652	14,515	2.6%	594,120	12,819	2.2%	591,742	10,998	1.9%
	지난년도 수입	120,824	84,900	70.3%	112,716	80,580	71.5%	99,340	81,404	81.9%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16,080	2,439	15.2%	7,414	163	2.2%	3,132	289	9.2%
	사용료수입	51,775	1,869	3.6%	51,905	1,858	3.6%	56,679	2,261	4.0%
	수수료수입	24,106	548	2.3%	24,191	214	0.9%	23,397	252	1.1%
	사업수입	17,790	15	0.1%	3,860	27	0.7%	35,443	11	0.0%
	징수교부금수입	4,078	-	0.0%	4,313	-	0.0%	4,639	-	0.0%
	이자수입	18,560	116	0.6%	18,319	35	0.2%	9,208	113	1.2%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징 결 정 액	미 수 액	비 율	징 결 정 액	미 수 액	비 율	징 결 정 액	미 수 액	비 율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89,572	-	0.0%	20,446	-	0.0%	20,179	398	2.0%
	자치단체간부담금	3,144	10	0.3%	10,585	3	0.0%	2,147	-	0.0%
	보조금반환수입	79,306	6,021	7.6%	70,167	1,890	2.7%	80,675	2,409	3.0%
	기타수입	102,214	2,482	2.4%	66,431	3,978	6.0%	69,842	1,358	1.9%
	지난년도수입	20,363	12,873	63.2%	19,676	13,823	70.3%	18,728	14,115	75.4%
지방행정재·부과금등	과징금	282	2	0.7%	204	76	37.3%	320	40	12.5%
	이행강제금	648	296	45.7%	514	455	88.5%	520	408	78.5%
	변상금	14,660	11,419	77.9%	3,116	878	28.2%	2,934	1,216	41.4%
	과태료	1,859	846	45.5%	1,149	228	19.8%	1,192	259	21.7%
	환수금	52	10	19.2%	193	146	75.6%	38	9	23.7%
	부담금	-	-	-	91	9	9.9%	9	9	100%
	범칙금	67	17	25.4%	-	-	-	-	-	-

2023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2022회계연도 미수납액 대비 12,61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또한 15,179백만원 증가하여 총 미수납액 증가액은 27,789백만원(15.9%)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3.4%가량으로 전년도 2.9%대비 0.5%가량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 비율은 70.3%로 전기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증가는 전년도까지 캠프에서 관리하고 있던 사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실로 이관된 결과이며, 회계재산 담당관의 변상금 미수납액은 10,343백만원으로 전체 변상금 미수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의 변상금 미수납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8년 향도학원에서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현 향도중학교 등의 토지를 부산시로부터 매입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하여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처벌 부과금을 부과하였으나 향도학원에서는 계속하여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재산은 담보 및 강제처분 할 수 없어 현재 압류 등 징수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무재산	35,581	17.58%	33,272	19.04%	33,082	20.53%
행방불명	2,789	1.38%	3,589	2.05%	2,828	1.75%
납세태만	28,996	14.32%	24,122	13.80%	30,740	19.07%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181	0.09%	164	0.09%	1,415	0.88%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폐업 또는 부도	15,790	7.80%	13,226	7.58%	12,303	7.63%
소송계류	10,901	5.38%	2,748	1.57%	1,690	1.05%
자금압박	79,258	39.15%	72,122	41.28%	57,918	35.95%
기 타	28,940	14.30%	25,498	14.59%	22,716	13.14%
합 계	202,436	100.00%	174,741	100.00%	166,323	100.00%

2023회계연도 세입금 미수납액 원인분석 결과 자금압박, 무재산, 납세태만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세입금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금압박, 무재산, 납세태만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미수납의 사유는 자금압박과 무재산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납세태만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수납액의 사유별 원인을 보면, 자금압박과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56.7%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상당하며, 과거 회계 결산 결과를 확인해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금압박과 납세태만의 경우 납세자의 의지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 납부가 가능하며, 부산광역시에서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강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수행할 경우 무재산, 폐업 또는 부도의 사유와 달리 수납률을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의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 수입을 제외할 경우 자동차세의 미수납액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차세의 미수납 요인 중 납세태만(26.3%)과 자금압박(44.2%)이 총 70.5%로 전체 미수납액의 비중인 53%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자가 자산 및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산광역시에서 체납처분 등의 절차로 충분히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외수입에 관한 사항

가) 현황 및 문제점

2023회계연도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91,443백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294,600백만원의 31.04%에 달할 정도로 그 금액이 상당하며 2022년도 65,382백만원 대비 39.86% 증가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의 경우 명지자원에너지센터의 소각열 판매대금으로 매월 7억 원 내외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3월까지의 해당 수입을 그외수입 과목으로 처리하였으나, 2023년 4월부터는 사업수입의 기타사업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시스템상으로 그외수입 내역의 부과 대상과 부과 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가 20억원 가량 있는 등 그외수입 발생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외수입 과목 자체가 정형화 되어 있는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불가능한 세입을 처리하기 위한 과목인데 발생 사유 등은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 또는 불용재산 매각대금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고 그외수입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의 반납금액 또한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그외수입 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부산시는 각 부서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처리를 하고 있으나, 부서의 특성상 예산편성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오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순환과의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소각열 판매대금의 경우에도 2023년 4월부터는 사업비 과목으로 변경하는 등 그외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외수입 항목은 정보이용자가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항목으로 부과 대상과 부과 정보 등은 세외수입시스템상에서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부서가 일부 존재하는 점은 추후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시스템상에서 과세자료 작성과 결재 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세입금 정리보류 처분에 관한 사항

가) 현황 및 문제점

세입금은 징수액이 결정되고 징수부와 후 징수로 인하여 과세권이 종결되고 부산시의 수입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통해 부산시의 세입결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유로 인하여 미수납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각 미수납 사유별로 금액을 집계하고 사후적으로 징수 활동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과세권이 없어질 경우 정리보류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정리보류 금액은 51,970백만원으로 전년도 32,466백만원 대비 19,504백만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전년도 정리보류 처분이 없었던 담배소비세 5,966백만원이 정리보류 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에도 8,597백만원 가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2020년도 중 관세청의 조사로 확인된 니코틴 용액 수입신고 누락에 대하여 2023년 1월 각 지자체별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였고 부산시의 부과 금액은 112억원이며, 이중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폐업 이거나 무재산인 경우 정리보류로 처리하였으며 금액은 52억원 가량입니다.

2021년도 동일한 건으로 미등록 수입업체에 대하여는 통관된 세관의 주소지인 부산시와 인천시에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였으나, 대부분 미수납되어 대규모 정리보류 처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등록 수입업체의 경우 담배소비세 부과 방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각 지자체의 담배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결론이 났으나, 이미 관세청 조사를 실시한 지 수년이 지난 후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다

보니 많은 업체들이 폐업하는 등 수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미수납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41,277백만원 가량 증가하여 증가율은 25.61%이나, 정리보류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19,504백만원 증가하여 증가율이 60.1%로 미수납액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정리보류 처분의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배분금액 부족	1,900	3.66%	1,541	4.75%
체납처분 중지	277	0.53%	138	0.43%
시효소멸	3,933	7.57%	4,149	12.78%
행방불명	509	0.98%	701	2.16%
무재산	23,457	45.14%	14,882	45.84%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56	0.11%	17	0.05%
평가부족액	21,817	41.97%	10,823	33.33%
기타	21	0.04%	215	0.66%
합 계	51,970	100.00%	32,466	100.00%

2023회계연도 세입금 정리보류 처분의 원인분석 결과 무재산, 평가부족액, 시효소멸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평가부족액으로 정리보류 처분한 금액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하여 담보 또는 압류하였던 부동산 평가 금액이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2022회계연도 대비 정리보류액의 증가는 담배소비세 정리보류액 증가와 기존 압류 및 담보 설정된 부동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부족액의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관세청의 조사 등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부과를 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각 지자체의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 부산시의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보류 사유 중 평가부족액 금액은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한 점 또한 부산시의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의 문제보다는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오히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정리보류 처분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부분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압류 및 독촉 등의 행위를 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조세채권과 소송비용이 확정되어 납세자에게 부과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을 위하여 재산조회를 하여도 소송기간이 장기간인 관계로 무재산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의 경우에도 토지매입비용 반환 관련 소송을 진행하여 2023. 11. 16. 법원의 선고 확정으로 16억원 가량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으나, 납세자가 납부를 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조회를 하여도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소송의 결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수납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보조금 반환수입에 관한 사항

가)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보조금 반환수입의 징수결정액과 환급결정액은 각각 79,306백만원과 2,501백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9,139백만원(13.0%) 증가하였으며, 환급결정액 또한 611백만원(32.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수입의 미수납액이 전년도 1,891백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미수납액은 6,021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 증가 금액은 4,130백만원(218.4%)입니다.

미수납액의 발생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반환을 부과하는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반환을 하여야 하는 구·군 등에서 반납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자연재난과의 경우 이중으로 부과하여 미수납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위: 원)

부 서	세 입 목	미 수 납 액	미수납 사유
문 화 예 술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641,496,100	2023년 구·군 예산미편성
자 연 재 난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895,136,370	세외수입 중복부과 2024년도 감액 조치 예정
장 애 인 복 지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454,253,330	2023년 구·군 예산미편성
노 인 복 지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08,777,920	2023년 구·군 예산미편성
출 산 보 육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30,949,010	2023년 구·군 예산미편성
아 동 청 소 년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18,179,130	2023년 구·군 예산미편성
투 자 유 치 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998,352,000	2024. 1. 2. 환수
제 조 혁 신 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68,824,550	자금압박

영상콘텐츠산업과 등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초 반환금 부과 시 세입 과목을 잘못 입력하여 환급 처리 후 세입 과목을 변경하여 부과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일반적으로 보조금 반환수입의 경우 선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하여 회수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보조금의 지출이 지자체 및 부산시 산하기관의 실정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 시 수령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하여 보조금이 필요한 지자체 및 기관에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군에 대한 보조금 반환수입이 미수납되는 경우는 구·군에서 세출 예산 편성 시 이를 간과한 결과이므로 보조금을 지급한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수취한 구·군에 예산편성 시 보조금반환이 반영되도록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의 경우 대부분 최초 부과 시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각 부서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보조금반환 수입(223)항을 신규로 신설할 정도로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반환수입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기울일 것을 권고드립니다.

5)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가) 현황 및 문제점

회계재산담당관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예산액은 40,000백만원이나, 징수결정액 금액은 70,347백만원으로 금액 차이가 30,347백만원 가량 발생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체에 대하여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의 경우 『매수신청→재산 활용조회 및 실태조사→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일상감사→감정평가 실시→매매계약 체결→대금납부→소유권이전』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계약이 체결될 경우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요구기한은 2023. 9. 22.이므로 해당 일자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대금을 부과한 경우 예산액에 반영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재산담당관의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하여 2023. 9. 22. 이후 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을 부과한 금액은 14,824백만원이며, 위 징수결정액 70,347백만원에 14,824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예산금액은 40,000백만원이므로 15,523백만원이 예산 반영 시 누락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또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금액의 차이가 5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용수입료(212)과목에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0억 원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사용료수입의 미수납액은 13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424백만원의 1.7%에 불과하며, 세부 항목 또한 매각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2차 추경예산 편성 시 징수결정액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하여 세출예산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서 각 부서의 업무가 정해지게 되므로 세입예산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계재산담당관의 매각대금에 대한 예산 미반영 금액은 150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므로 추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누락없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부산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세외수입 항목 중 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과목에서 예산 금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 지난년도 미수납액이므로 납기미도래로 인한 미수납 이외에는 당해연도에 수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예산액이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보조금 반환수입의 경우 그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반환금액 정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1) 세출결산 총괄 사항

가)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의 최근 5년간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예산현액(A)	13,126,532	13,330,541	12,968,088	11,852,367	9,827,683
세출결산액	12,494,905	12,647,184	12,277,395	11,495,801	9,445,026
이 월 액(B)	323,100	387,612	367,173	233,100	240,398
증 감 액	△64,512	20,439	134,073	△7,298	△28,387
비율(B/A)	2.46%	2.91%	2.83%	1.97%	2.45%
보조금반납금(C)	68,108	20,074	33,189	55,121	20,419
증 감 액	48,034	△13,115	△21,932	34,701	3,596
비율(C/A)	0.52%	0.15%	0.26%	0.47%	0.21%
집행잔액(D)	240,419	275,671	290,331	68,345	121,840
증 감 액	△35,252	△14,660	221,986	△53,495	6,185
비율(D/A)	1.83%	2.07%	2.24%	0.58%	1.24%
계(E=B+C+D)	631,627	683,357	690,693	356,566	382,657
비율(E/A)	4.81%	5.13%	5.33%	3.01%	3.89%
순세계잉여금	526,661	476,538	594,992	620,232	175,760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04,009백만원(1.53%)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52,279백만원(1.20%) 감소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526,66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123백만원 증가하였고, 최근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478,837백만원 대비 47,82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240,419백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83%로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잔액 비율 1.59%에 비해 0.24% 증가하였으며, 전년도(2.07%) 대비 0.2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예산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당 초 예 산		12,005,016	11,128,167	10,341,851
제1회 추경예산	증 감	592,177	1,288,627	1,001,622
	계	12,597,193	12,416,794	11,343,473
제2회 추경예산	증 감	120,785	532,523	816,482
	계	12,717,978	12,949,317	12,159,955
제3회 추경예산	증 감	-	-	532,537
	계	-	-	12,692,492
제4회 추경예산	증 감	-	-	-
	계	-	-	-
간주예산	증 감	20,942	14,051	42,496
	계	12,738,920	12,963,368	12,734,988
최 종 예 산		12,738,920	12,963,368	12,734,988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106.11%	116.49%	123.14%

회계연도별로 매년 2회 이상 당초예산의 변경이 있었으며, 최종예산은 당초 대비 6.11%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 연도별로 예산액의 흐름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 시 일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세입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2회 이상의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당년도의 세입 및 세출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에 추경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년도 간주예산 처리액은 전년도 대비 6,89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526,66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12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478,837백만원 대비 47,824백만원 (9.98%)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증가한 이유는 본예산 편성 시 부산시가 2023회계연도 세입 규모를 낮게 예측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 및 지출 잔액 과다 편성 및 발생도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정확한 세입 예측을 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시 각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투자(경상)사업 설명서를 작성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바, 이때 당해연도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진행과정 및 투자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세출과 그와 관련된 필요한 세입을 예상하여 편성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연간 필요한 자금의 일부만 당초예산의 세출로 편성하고 이후에 자금이 확보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출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식이라면, 일부의 사업은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중단 및 보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연간 사업별 필요예산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투자(경상)사업 설명서를 작성한 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연도별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의 철저한 편성으로 예산편성의 유동성을 최소화하여야 세입과 세출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예산이월 관련 일반 사항

가)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명시이월	217,938	196,993	225,062	147,633	142,299
증감액	20,945	△28,069	77,429	5,334	20,028
사고이월	103,974	122,482	78,740	72,218	73,659
증감액	△18,508	43,742	6,522	△1,441	△26,801
계속비이월	1,143	68,137	63,371	13,249	24,440
증감액	△66,994	4,766	50,122	△11,191	△21,614
합 계	323,100	387,612	367,173	233,100	240,398
증감액	△64,512	20,439	134,073	△7,298	△28,387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0,94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각각 18,508백만원, 66,99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의 건수 및 자금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년			2022 년			2021 년		
	건수	자금	자금없는	건수	자금	자금없는	건수	자금	자금없는
명 시	135	217,630	353	142	164,431	32,562	148	224,062	1,000
사 고	182	103,974	-	186	120,986	1,496	132	78,453	287
계 속비	4	1,143	-	10	68,137	-	9	63,371	-
합 계	321	322,747	353	289	353,554	34,058	289	365,886	1,287

당년도에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자금을 수반하는 이월액과 자금이 없는 이월액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발생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내용은 달맞이 공원 조성사업,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사업, 15분 도시 부산 조성(전환사업),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보조) 등이며, 사고이월의 경우 저장버스 도입보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등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차기매립장 조성사업 등입니다.

주요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이월액 5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이 월 사 유
도시균형개발과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보조)	38,123	15,537	2,250	보상 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른 미집행
15분도시기획단	15분 도시 부산 조성 (전환사업)	20,200	18,486	541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착공 지연
보행도시정책과	보행길 조성 사업	9,759	6,000	1,067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도 로 계 획 과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18,012	11,181	1,835	차수공사에 따른 2차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공 원 정 책 과	달맞이공원 조성	32,000	30,405	-	보상 사전절차 지연
버 스 운 영 과	저상버스 도입보조	28,747	-	11,755	차량 공급 부족
공공교통정책과	모빌리티 정책 추진	17,300	6,800		2023년 12월 환급액을 2024년 1월에 지급
해양레저관광과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8,217	2,570	3,350	국고보조금 연말 교부 에 따른 집행 불가
총 무 과	청사 사무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8,741	1,336	4,629	절대공기 부족(열린 행사장 리모델링 공사)
창업벤처담당관	엘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8,155	6,000	1,154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 착공 지연
제 조 혁 신 과	무공해차 보급사업(수소버스)	19,000	9,800	-	수소충전소 구축지연 및 수소버스 생산지연
환 경 정 책 과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	6,403	2,885	2,866	국고보조금 2023년 10월 교부로 집행 불가
탄소중립정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	40,674	-	5,389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지연
탄소중립정책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조)	138,980	5,385	6,876	경기침체에 따른 전기자동차 신청 저조
하 천 관 리 과	낙동강 하굿둑 개방 대책사업	14,961	4,300	1,526	절대공기 부족
산 림 녹 지 과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직접)(전환사업)	11,624	6,446	142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해양수도정책과	STEM 빌리지 조성(보조)	13,738	7,754	2,792	사전절차 지연으로 공사발주 지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는 큰 변화가 없으며, 주로 동일한 사업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거나, 경기침체에 따른 전기자동차 신청 저조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연도에 추진하고 있는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 사업비	기 투 자	당해연도 사업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계
2023년	60건	5,211,918	1,727,903	94,441	211,956	218,611	525,008
2022년	70건	4,906,571	1,524,867	115,489	237,371	106,828	459,688
2021년	66건	4,589,485	1,105,636	153,394	274,861	86,450	514,705
2020년	64건	4,506,107	1,256,638	146,693	189,211	4,808	340,712
2019년	54건	4,051,157	1,098,509	103,923	211,412	2,000	317,335

2023년도의 장기사업 중 완료는 15건, 총사업비 773,369백만원이며,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 총사업비 404,376백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의 비중은 전기 29%에서 52%로 증가하였습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이월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크게 변화는 없으며, 대부분 절대 공기 부족,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반도체 부족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 및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의회의 승인 및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액의 과소로 이월되는 것은 매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선정 및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 확보 후 1년간 명시이월 후 그 다음연도에 다시 1년간 사고이월을 하여 관습적인 이월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도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사업예산 편성 시 연말에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편성된 추경예산의 과도한 이월, 불용 미집행

가) 현황 및 문제점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취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해 재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경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기존 예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적재적소 그리고 적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추경예산 712,962백만원 중 2024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323,100백만원, 집행잔액은 240,419백만원으로 추경예산의 79%가량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미집행되는 규모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추경예산보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높은 사업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추경예산보다 높은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 부 사 업	추경예산	이 월 액			집행 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도 시 균 형 개 발 과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보조)	8,857	15,537	2,250	17,787	-
1 5 분 도 시 기 획 단	15분 도시 부산 조성(전환사업)	5,000	18,485	541	19,026	13
도로계획과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6,613	11,181	1,835	13,016	-
제조혁신과	무공해차 보급사업(수소버스)	9,100	9,800	-	9,800	-
산림녹지과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직접)	3,500	6,446	142	6,588	9
해 양 수 도 정 책 과	STEM 빌리지 조성(보조)	4,123	7,754	2,792	10,546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미 본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가하거나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사전 면밀한 계획과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진행한 다음 당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연도말까지 집행되지 못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추경 편성 이후 사전절차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하고 연도말에 원인행위를 하면서 익년도로 준공기한을 정하는 등의 행위는 “예산 단년도주의 원칙”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러한 추경예산의 과도한 편성 및 집행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전액 불용

가) 현황 및 문제점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다음연도 정확한 예산편성 계획에 의하여 이월예산을 산정하고 정확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이월사업비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보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중 당기 전액 불용 처리된 주요 사업>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 부 사 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문 화 시 설 개관준비과	문화진흥기금 전출	25,000	-	25,000	-	25,000

체 진 흥 과	구덕운동장 재개발	200	-	200	-	200
건 설 본 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건설	5,850	-	5,850	-	5,850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의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은 꼭 필요한 예산집행의 방해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금만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적정예산의 편성과 적기 집행을 제고하고, 추경 시 정리하여 집행잔액을 의지를 갖고 줄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합니다.

5)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분류 철저

가) 현황 및 문제점

결산서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승인에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분류가 매우 중요한데 이월사유의 분류 오류는 예산편성과 예산승인에 잘못된 의사결정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사고이월이 발견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지 출 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빅데이터통계과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6,596	4,037	-	1,979
보행도시정책과	걸으면서 행복한 15분 도시	300	100	44	156

도 시 계 획 과	부산 수변관리 특화 계획 수립	1,100	770	-	330
도 로 계 획 과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 도로(농공단지~예림교 차로) 확장	1,663	1,081	146	436
도 시 철 도 과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600	360	-	240
총 무 과	청사 사무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8,741	2,775	1,336	4,630
마이스산업과	백스코 시설확충	6,500	4,100	-	2,400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명시이월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이며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기의 사업은 2024년에 지출되는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이는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해야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규정을 재확인하여 오류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각 사업부서별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차후 이월사유에 따라 정확하게 이월처리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6) 전년도 사고이월액 집행 사항(이월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경우)

가) 현황 및 문제점

전년도 이월사유별 집행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현황과 같이 전년도 사고이월액보다 당해 지출액이 많아서 불용액이 부(-)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상에서 재원 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경우>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구 분	사 업 명	전 년 도 사 고 이 월 액	지 출 액	불 용 액
산림녹지과	2022년 사고이월	지자체 도시숲 조성 (전환)	480	474	6
	2023년 본예산			96	△96
합 계			480	570	△90
창조도시과	2022년 사고이월	도시재생 정책 개발	386	386	0
	2022년 명시이월			78	△78
합 계			386	464	△78
택시운수과	2022년 사고이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개선	49	48	1
	2023년 본예산			7	△7
합 계			49	55	△6

산림녹지과의 경우, 2023년 본예산 재배정 예산이 동일 항목으로 편성, 배정되어 2023년 본예산 재배정 지출의 일부가 사고이월예산 집행액으로 시스템상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사고이월액에 대한 불용액이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부(-)의 금액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창조도시과의 경우, 사고이월 초과 지출액은 재배정기관에서 e호조 입력시 명시이월비 254,746,700원에서 지출한 것으로 입력하여야 하나 사고이월비로 착오 입력하여 불용액 금액이 (-)로 산출되었습니다.

택시운수과의 경우, 재배정기관에서 2022년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한 사고이월 예산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외에 2023년 본예산을 재원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출액을 사고이월비로 착오 입력하여 불용액이 부(-)의 금액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금액이 발생하는 사업들도 많고, 본예산도 추가배정 받아 동일 사업에 대한 재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예산의 자금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보다 나은 예산집행을 위해 집행하는 자금의 원천을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군 등에 재배정되는 예산일지라도 최종 관리는 부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관리가 미비할 경우 재배정기관에 정확한 재원 관리를 위한 안내를 비롯하여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하는 역할까지 잘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관한 주요 사항

가)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 세출의 집행잔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집행사유 미발생	38,266	15.92%	2,260	0.82%	2,324	0.80%
증 감 액	36,005	1592.44%	△63	△2.71%	-6,093	-72.39%
예산절감	37	0.02%	184	0.07%	30	0.01%
증 감 액	△147	△79.89%	154	513.33%	19	173%
낙찰차액	1,883	0.78%	1,177	0.43%	1,734	0.60%
증 감 액	706	59.98%	△557	△32.12%	836	93.10%
지출잔액	135,444	56.34%	143,542	52.07%	93,872	32.33%
증 감 액	△8,098	△5.64%	49,670	52.91%	57,654	159.19%
보조금 정산잔액	11,736	4.88%	6,262	2.27%	5,441	1.87%
증 감 액	5,474	87.42%	821	15.09%	1,115	25.77%
예비비	53,053	22.07%	122,246	44.34%	186,930	64.39%
증 감 액	△69,193	△56.60%	△64,684	△34.60%	168,455	911.80%
합 계	240,419	100.00%	275,671	100.00%	290,331	100.00%
증 감 액	△35,252	△12.79%	△14,660	△5.05%	221,986	324.80%

당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40,41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252백만원 (12.79%)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분 야 별	2023년	2022년	2021년
일 반 공 공 행 정	0.82	0.62	0.74
공 공 질 서 및 안 전	0.13	0.08	0.07
교 육	0.00	0.00	0.00
문 화 및 관 광	5.23	0.97	1.37
환 경	1.46	1.48	1.52
사 회 복 지	0.06	0.06	0.07
보 건	1.05	0.96	0.15
농 립 해 양 수 산	0.67	1.13	0.7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78	0.43	0.76
교 통 및 물 류	7.15	5.73	3.26
국 토 및 지 역 개 발	0.45	1.42	0.42
과 학 기 술	0.00	0.02	0.02
기 타	2.78	4.28	2.43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기타 분야는 집행잔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편성은 하였으나 지출 또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1천만원 이상 전액불용 사업(예비비 제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22개 사업 35,064백만원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 서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의 회 사 무 처	의정활동 교류사업	15	15	100
예 산 담 당 관	기관운영	20	20	100
예 산 담 당 관	기관운영	150	150	100
도 로 계 획 과	식만~사상 혼잡도로(감리비)	550	550	100

부 서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문화시설개관준비과	문화진흥기금 전출	25,000	25,000	100
체 육 진 흥 과	구덕운동장 재개발	200	200	100
외 교 통 상 과	국제협력 활력 추진	33	33	100
복 지 정 책 과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	10	10	100
출 산 보 육 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인센티브	40	40	100
인 사 과	출산휴가자업무대행(집중관리)	15	15	100
부 산 도 서 관	공공도서관 실감형체험관 조성 지원	79	79	100
투 자 유 치 과	국고보조금 반환	780	780	100
제 조 혁 신 과	탄성소재연구소 건립 사업(국가직접지원)	10	10	100
해 운 항 만 과	지방이양항만지원	10	10	100
수 산 진 흥 과	2020년 어촌뉴딜사업	2,231	2,231	100
인 재 개 발 원	전문교육 운영	11	11	100
건 설 본 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건설	5,550	5,550	100
건 설 본 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건설	300	300	100
광 역 행 정 과	시정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 구축	15	15	100
광 역 사 업 과	중앙-시도 간 협력적 관계 구축	20	20	100
광 역 사 업 과	중앙-시도 간 협력적 관계 구축	15	15	100
광 역 사 업 과	중앙-시도 간 협력적 관계 구축	10	10	100

당해년도의 1천만원 이상 전액불용 사업(예비비 제외)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의 20개 사업 6,385백만원에 비하여 사업 수는 2개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28,67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집행잔액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의 관행적 편성, 편성된 예산의 소극적 집행, 추경 시 적절한 감액결정 누락 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최초예산 편성 시 과거의 집행잔액 발생 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업예산의 예측과 사용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폐지된 부서와 관련된 집행잔액

가) 현황 및 문제점

부울경특별자치단체합동사무국은 2023년 3월경 부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의 집행 시기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2023년의 예산 496백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지 이후 관련 인력 및 부서의 부존재 및 정산 미완료 등의 사유로 인해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반영되어 다른 곳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소 관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부울경특별자치단체합동사무국	496	107	389

나) 개선 및 권고사항

부산광역시는 회계연도 내에 폐지할 것이 확정적인 부서가 존재할 경우 폐지 전에 선제적으로 정산하여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상기의 사항처럼 1차 추경 전에 폐지된 부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 등의 부서에서 폐지된 부서의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추경 때 반영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보조금 집행잔액에 관한 주요 사항

가)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의 보조금 집행잔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당 해 예 산				이월예산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H=D+E+ F+G)	비 율 (H/ A)
	보 조 금 수 령 액 (A)	집 행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A-B-C)	명 시 이 월 (E)	사 고 이 월 (F)	계속비 이 월 (G)		
2023년	5,215,464	5,070,988	107,899	36,576	31,240	1,257	7,518	76,591	1.46
2022년	5,284,715	5,087,710	182,090	14,915	6,803	2,386	-	24,104	0.46
2021년	5,771,974	5,535,802	229,360	6,812	10,287	1,253	-	18,352	0.32
2020년	5,656,003	5,523,945	107,460	24,598	8,736	96	233	33,663	0.73
2019년	3,765,255	3,655,793	82,970	26,492	7,439	1,032	-	34,963	0.93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1,661백만원 증가한 36,576백만원으로 그 사유는 당해연도 보조금 수령액이 69,251백만원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집행금액 및 이월액 역시 각각 16,722백만원 및 74,191백만원 만큼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령액이 전기 대비 약 1.3% 감소할 동안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기 대비 약 245% 증가하면서 보조금 수령액 대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비율이 전기 대비 약 1%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일 반 사 업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합 계
2023년	31,528	30,207	893	92	62,720
2022년	9,943	5,303	1,667	-	16,913

당년도의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45,80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반납되는 주요 사업 내역(미집행액 5억원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수령액 (국비)	수령액 (시비)	계	미집행액	비 율
탄소중립정책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97,404	-	97,404	26,405	27.11%
도 로 계 획 과	식만~사상 혼잡도로 (시설비)	23,400	-	23,400	23,400	100.00%
하 천 관 리 과	낙동강 하굿둑 개방 대책사업	10,380	-	10,380	4,634	44.64%
제 조 혁 신 과	무공해차 보급사업 (수소전기차)	5,625	-	5,625	2,520	44.80%
체 육 진 흥 과	부산 반디비 체육센터 건립(전환사업)	1,000	-	1,000	700	70.00%
탄소중립정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보조)	6,828	-	6,828	680	9.96%
환 경 정 책 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 설 설치 지원	3,142	-	3,142	548	17.45%
도 로 계 획 과	식만~사상 혼잡도로 (감리비)	550	-	550	550	100.00%

나) 개선 및 권고사항

당년도의 집행잔액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및 식만~사상 혼잡도로 사업 미행잔액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의 경우 여건 및 사업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전적 및 사후적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실적보고서 제출 검증

가) 현황 및 문제점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고 함) 제17조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하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 시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함)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사용하여 관리함에 따라 실시간 보조금의 집행이 가능하고 잔액 반납에 있어서도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2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방식)으로 통합관리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고 2023년부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운영(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7월 시범운영 후 2024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기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사업 정산 마감 현황 검토 결과 정산마감 비율이 81.5%로 2024년 2월까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를 통하여 정산 마감을 해야 하지만 아직 정산 마감이 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각 지방보조사업자들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에서 정산 마감을 마감 기한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안내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방보조사업자들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을 통한 원활한 정산 마감을 위하여 주기적인 시스템 교육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전담인력을 별도로 구성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연구용역비에 대한 절감 방안 검토

가) 현황 및 문제점

2023회계연도 부산시 일반회계 주요 거래처별 연구용역비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거 래 처 명	품의금액	비 율	비 고
(재)부산연구원	787	-	·부산광역시 연구목적 출연기관
(재)부산연구원외 1	1,250	-	
소 계	2,037	23.47%	
(주)피앤	650	7.49%	·도시브랜드 디자인개발 용역수행
머서코리아주식회사	450	5.18%	·도시브랜드 대외경쟁력 강화 용역수행
주식회사지브이컨설팅	150	1.73%	·영어하기 편한도시 조성 사업화 용역 및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수행
기타	5,394	62.13%	
합 계	8,681	100.00%	

2023회계연도 연구용역비 중 상당 부분이 (재)부산연구원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재)부산연구원은 부산광역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부산광역시가 매년 지급하는 출연금(100억원)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연구용역비 집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지급하는 출연금 이외에 부서의 필요성에 따라 발주 및 집행되는 연구용역비가 (재)부산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과제와 유사한 연구용역이 발주되는 계약 건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부산광역시 각 부서에서 (재)부산연구원에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재)부산연구원의 출연금에 수반되어 수행하는 업무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검토하는 담당부서의 역할수행이 필요하며, 또한 (재)부산연구원의 기본업무 수행과제를 선정할 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과제도 출연금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포함하여 선정하도록 한다면 보다 나은 합리적인 연구용역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1) 결산액과 잔액증명서의 대사

202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은 67,596백만원으로서, 이는 부산광역시 금고 보관 잔액증명서와 일치합니다.

2) 기타특별회계별 세입결산

가) 현황 및 문제점

본 회계연도의 16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징 수 비 율 (C/A)	정 보 류 리 액	미 수 납 액
전년도(①)	2,635,864	2,683,016	2,638,307	100.09%	5,023	39,686
당해연도(②)	2,698,827	2,760,449	2,709,497	100.09%	375	50,577
전년도比 (②-①)	62,963	77,433	71,190	0.31%	△4,648	10,891
증감률(%) [(②-①)/①*100]	2.39%	2.89%	2.70%	0.40%	△92.53%	27.44%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09%로 전년도 예산현액 100.40%보다 0.31%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7.44%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0,577백만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46,533백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 1,855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16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의 9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2>의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추세를 살펴보면, 5년간 계속적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22년 대비 2023년 세입은 2.70%, 세출은 5.31%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0% 감소하였습니다.

<표2>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의 5개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세 입		2,709,497	2,638,307	2,544,443	2,313,898	2,289,140
세 출		2,641,901	2,508,706	2,418,504	2,203,815	2,093,895
잉여금	소 계	67,596	129,601	125,939	110,083	195,245
	이 월 금	25,796	87,520	55,953	53,349	91,140
	보 조 금 실 제 반 납 금	234	53	6	74	3,053
	순 세계 잉 여 금	41,566	42,028	69,980	56,660	101,052

본 회계연도 수납액은 <표3>에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보다 71,190백만원 증가한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차고지조성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유료도로특별회계,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재정비축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수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경륜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회계연도의 수납액은 세입 예산액 2,698,827백만원보다 10,670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회계별로는 16개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회계에서 초과 수납되었고, 경륜사업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서 부족하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표3〉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전년도 이월액)	징 결 정 액	실 수 납 액	정 보 류 액	미수납액	실 제 수납액 / 징수결정액 비율
2023년	2,698,827 (87,521)	2,760,449	2,709,497	375	50,577	98.15%
2022년	2,635,864 (60,752)	2,683,016	2,638,307	5,023	39,686	98.33%
2021년	2,547,853 (57,068)	2,573,581	2,544,443	276	28,862	98.87%
2020년	2,317,621 (91,140)	2,343,163	2,313,898	480	28,785	98.75%
2019년	2,258,742 (49,186)	2,321,212	2,289,140	458	31,614	98.62%

본 회계연도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10,891백만원 증가한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의 미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표4〉 이월된 미수납액의 연도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제 수 납 액 (가)=(나)+(다)	현년도 수납액 (나)	과년도 수납액 (다)	(다)/전년미수납 이월액 비율
2023년	2,709,497	2,697,608	11,889	30.0%
2022년	2,638,307	2,633,285	5,022	17.4%
2021년	2,544,443	2,538,841	5,602	19.4%
2020년	2,313,898	2,303,178	10,720	33.9%
2019년	2,289,140	2,268,363	20,777	50.5%

아래의 <표5>는 지난년도 미수납액 관리실태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95.99%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이월 사유는 납세태만과 납기미도래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표5> 미수납액 관리실태

(단위 : 백만원)

기 타 특 별 회 계	미수납액	사 유								
		무재산	행 방 불 명	납 세 태 만	폐 업 부 도	소 송 계 류	국 외 주 이	자 금 박 압	기 타	납 기 미 도 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87							87		
교통사업	9,502	537	249	6,009	706	425	4	1,547	25	
광역교통	37,032			17,074						19,958
유료도로	1,855	16		1,839						
소방	85	1		47						37
학교용지 부담금	2,016							2,016		
합계	50,577	554	249	24,969	706	425	4	3,650	25	19,995

나) 개선 및 권고사항

① 미수납액 관리

미수납액은 세입결산 부분에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고, 과거 결산 검사 시에도 꾸준히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미수납액은 <표3>에서 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2회계연도에 비해 109억원, 약 27%가량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회계 단위별로 살펴보면 증가의 주요 원인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증가한 92억원이 2023회계연도의 미수납액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5>에서 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의 사유별로 살펴보면 주로 납세태만과 납기미도래의 사유로 미수납액 잔액이 크게 표시되고 있으며, 미수납액 총액대비 비율은 각각 49%, 3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단위별로 살펴보면, 납세태만의 사유로 집계되는 미수납액은 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납기미도래로 집계되는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대부분입니다.

납기미도래로 집계되는 미수납액의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부과 시기가 미도래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납세태만으로 분류되는 미수납액 중 부과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미수납액의 금액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3,520백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891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업의 특성상 채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적극적인 절차가 어려운 상황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유료도로특별회계의 경우 자동차 등 자산을 압류한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기 장기성 미수납액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유료도로특별회계에는 일부 채납 후 도주, 채납고지 후에도 계속적인 미납자 등 악성채납자에 대한 압류 재산의 처분, 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미수납액 관리를 권고드립니다.

나.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1) 세출결산 총괄사항

가) 현황 및 문제점

본 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의 5년간 결산 추세는 <표1>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비율을 비율 1과 비율 2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비율 1은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편성과 지출의 합리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기 이후의 세출예산 편성과 예비비 책정에 반드시 준거되어 활용되어야 하는 수치이며, 비율 2는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율입니다.

비율 1은 2021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율 2는 역시 2021년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당해연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본 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세출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계획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표1>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현액 (A)	지 출	이월액 (B)	집행잔액 (C)	비율 1 (C/A)	비율 2 (B+C)/A
2023년	2,698,827	2,641,901	25,796	30,778	1.1%	2.1%
2022년	2,635,864	2,508,705	87,521	39,454	1.5%	4.8%
2021년	2,547,853	2,418,504	60,753	68,067	2.7%	5.1%
2020년	2,317,621	2,203,815	57,069	55,964	2.4%	4.9%
2019년	2,258,743	2,093,895	91,140	68,015	3.0%	7.0%

한편 16개의 각 특별회계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상세 내역은 <표2>과 같습니다.

<표2>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감	계 회계 비 보	낙 차 차액	지 출 잔액	예비비	합 계
집 단 에 너 지 공 급 사 업					180	919	1,099
경 료 사 업					490		490
의 료 급 여 기 금					103	1,000	1,103
교 통 사 업	286			61	418	2,037	2,802
광 역 교 통 시 설						659	659
공 영 차 고 지 조 성 사 업					9		9
도 시 철 도 사 업					626	2,936	3,562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대 지 등 보 상					258		258
유 료 도 로						306	306
원 자 력 발 전 지 역 개 발	12				2,546	1,128	2,558
재 정 비 촉 진						128	128
기 반 시 설 부 담 구 역						34	34
화 력 발 전 지 역 개 발					53	135	188
소 방	3	95	93	54	1,113	164	1,522
학 교 용 지 부 담 금					2	14,294	14,296
국 민 주 택 사 업						636	636
합 계	301	95	93	115	5,798	24,376	30,778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은 주로 지출 잔액 및 과다한 예비비 편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비비가 과다하게 설정된 상황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 설정 기준을 초과한 것에 기인합니다.

<표3>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초과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예비비 설정 한도 (1 %)	예 비 비	초 과 액	초 과 율
집 단 에 너 지 공 급 사 업	29,011	290	919	629	217%
교 통 사 업	106,764	1,068	2,037	969	91%
광 역 교 통 시 설	36,022	360	659	299	83%
도 시 철 도 사 업	572,031	5,720	2,936	2,784	49%
원 자 력 발 전 지 역 개 발	37,384	374	1,128	754	202%
화 력 발 전 지 역 개 발	3,174	32	135	103	322%
학 교 용 지 부 담 금	33,667	337	14,294	13,957	4,142%

나) 개선 및 권고사항

① 예비비 편성관리

2022회계연도 대비 2023회계연도에는 대부분의 회계단위에서 예비비 편성액이 감소되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 일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예비비 편성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범위에 있습니다.

다만, 2023회계연도의 예비비 편성액 25,772백만원 대비 사용액은 1,378백만원으로 5.34%에 불과하므로 가능한 예비비 편성액은 최소화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용액 880백만원도 2023년 1월 중 지출결정된 건(수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공사)으로, 연초의 예비비로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가능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② 지출잔액 관리

<표2>에서 표시된 2023회계연도의 집행잔액은 주로 예비비, 지출잔액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과도한 집행잔액은 과다한 예산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의 집행잔액 2,546백만원 중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조정교부금에서 2,444백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연관되는 원자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금액이 감소되었음에도 지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금액입니다.

또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기금전출금의 세출항목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2022회계연도 849백만원, 2023회계연도 178백만원으로, 징수 시점과 입금 시점의 차이로 인한 기금전출액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례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발생하지 않을 집행잔액 사례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권고드립니다.

③ 계속비 편성관리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시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2019년부터 집행을 개시하여 2024년 중 준공이 예정된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설사업(총 사업비 21,355백만원 중 시비 14,844백만원)와 소방특별회계의 2018년부터 설계비 등을 집행하여 2024년 중 준공이 예정된 소방학교 야외훈련장 조성공사(총 사업비 9,870백만원)의 경우 연도별로 예산을 분할하여 책정하고, 당해연도에 미지출된 예산을 차기 연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단년도에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공사와 다르게 전체 공사비에 대한 예산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장기공사계약이 계속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④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상기 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 학교용지특별회계의 경우 다른 기타특별회계 단위에 비해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바 있으며, 이는 기타특별회계에서 교육청으로 부담할 학교증축비 부담금의 2023회계연도 부담예상액을 산정한 금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서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한 경비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아 시와 교육청 간 부담금액에 이견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업자로부터 부담금은 세입으로 수령하고 구체적인 세출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출 행위 지연으로 시가 내부적으로 유보하는 자금이 증가하고 소극적인 세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비록 구체적인 비율이 법령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2023회계연도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의 세출 중 상당 부분은 달맞이공원 등 공원시설의 공원일몰제 실효에 따른 보상비 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이 중 2024년 4월 기준 전체보상비가 1,436억원으로 책정된 달맞이공원의 보상비는 보상사업의 협약체결 시점인 2022년 6월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매수자인 부산시와 매도자인 원소유주가 서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표준지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각종 추가요인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대표지인 해운대구 중동 986의 기준시가는 2021 회계연도 대비 254천원(17.36%) 증가된 바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른 공원일몰제의 실효기간은 20년의 장기간이고 지속적인 토지가격 증가에도, 시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소극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지역의 공원일몰제 실효 시점인 2022년 6월 25일에 근접하여 보상을 실시함에 따라 과다한 세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후 보상가격의 결정을 위해 매도인인 원소유자와의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출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가능한 불필요한 세출의 절감을 위해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권고드립니다.

3. 기금에 관한 사항

1) 기금의 조성액 및 기금별 사용 비율

가) 현황 및 문제점

본 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과 전년도 말 조성액의 합계액 대비 당해연도 사용액과 사용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1〉 기금의 조성 및 사용액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년도중 조성액(B)	당년도중 조성총액 (C=A+B)	당년도중 사용액(D)	사 용 비 율 (E=D/C)	당 연 도 말 조 성 액 (F=C-D)
계	1,073,768	902,359	1,976,127	998,366	50.52	977,76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1,367	571,745	723,112	638,715	88.33	84,397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1,330	2,005	3,335	2,357	70.67	978
집단에너지시설기금	14,822	1,528	16,350	11,000	67.28	5,350
중소기업육성기금	151,997	38,980	190,977	60,099	31.47	130,878
투자진흥기금	145,746	34,007	179,754	50,611	28.16	129,143
남북교류협력기금	9,616	368	9,984	20	0.20	9,964
자활기금	10,213	371	10,584	385	3.64	10,199
재해구호기금	13,384	47,125	60,509	26,716	44.15	33,793
식품진흥기금	14,419	2,231	16,649	1,441	8.66	15,208
환경보전기금	17,579	4,630	22,208	3,535	15.92	18,673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1,158	3,435	4,593	3,376	73.50	1,217
재난관리기금	31,415	48,863	80,278	31,022	38.64	49,25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88,732	22,108	210,840	10,997	5.22	199,843
양성평등·출산지원및 청소년육성기금	75,988	3,855	79,843	12,957	16.23	66,886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년도중 조성액(B)	당년도중 조성총액 (C=A+B)	당년도중 사용액(D)	사 비 용 율 (E=D/C)	당 연 도 해 말 조 성 액 (F=C-D)
문 화 진 흥 기 금	76,023	1,749	77,771	11,829	15.21	65,942
체 육 진 흥 기 금	69,360	24,886	94,246	3,652	3.87	90,594
지 역 개 발 기 금	98,680	92,259	190,938	129,652	67.90	61,286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1,938	2,059	3,998	-	0.00	3,998
고 향 사 랑 기 금	-	156	156	-	0.00	156

기금별 과거 3개년도 사용 비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2> 과거 3개년도 기금별 사용 비율 현황

연 번	기 금 명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1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88.33%	79.7%	99.5%
2	대 학 및 지 역 인 재 육 성 기 금	70.67%	60.2%	69.6%
3	집 단 에 너 지 시 설 기 금	67.28%	56.2%	3.6%
4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31.47%	26.7%	22.6%
5	투 자 진 흥 기 금	28.16%	9.3%	17.3%
6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0.20%	0.0%	0.0%
7	자 활 기 금	3.64%	4.0%	3.0%
8	재 해 구 호 기 금	44.15%	94.4%	79.6%
9	식 품 진 흥 기 금	8.66%	12.2%	5.9%
10	환 경 보 전 기 금	15.92%	13.2%	12.8%
11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73.50%	73.4%	78.4%
12	재 난 관 리 기 금	38.64%	75.2%	32.1%
13	도 시 및 주 거 환 경 정 비 기 금	5.22%	4.1%	4.4%
14	양 성 평 등 · 출 산 지 원 및 청 소 년 육 성 기 금	16.23%	14.9%	11.8%

연 번	기 금 명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15	문 화 진 흥 기 금	15.21%	30.4%	31.8%
16	체 육 진 흥 기 금	3.87%	1.8%	3.8%
17	지 역 개 발 기 금	67.90%	49.6%	54.0%
18	관 광 마 이 스 육성진흥기금	0.00%	0.0%	54.0%
19	고 향 사 랑 기 금	0.00%	-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과거 3개년간 사용 비율 현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자활기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체육진흥기금,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당해연도 최초 설치)은 기금의 사용 비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기금의 설치 사유는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므로 목적사업 내에서 사업 분야 및 대상의 확대 등 적극적 활용을 검토하여 당초의 기금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운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고,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용 비율이 저조한 기금의 경우 존속기간 종료 시 폐지 또는 존속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금예치 현황

가) 현황

기금별 당해연도 조성액에 대한 예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기금명	당해연도 조성액	기금 보관 상황												
		정예	기금	정적	기금	보예	통금	공예	금금	기자예	업유금	통정화	합안기	재정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4,397	84,333						64						
대학및지역인재 육성기금	978							978						
집단에너지시설기금	5,350							406					4,944	
중소기업육성기금	130,878	3,000						4,162	18,704			105,012		
투자진흥기금	129,143							29,466				99,676		
남북교류협력기금	9,964	1,773						2				8,189		
자활기금	10,199	1,100						1,007				8,092		
재해구호기금	33,793							13,544	20,249					
식품진흥기금	15,208	1,000		14				2,690				11,504		
환경보전기금	18,673							5,505				13,168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1,217							1,217						
재난관리기금	49,256	17,667						31,589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199,843	18,500						3,679				177,664		
양성평등·출산지원 및청소년육성기금	66,886	9,402		37				6,042				51,404		
문화진흥기금	65,942							40,425				25,517		

기금명	당해연도 조성액	기금 보관 상황						
		정예금	정적금	보통예금	공예금	기자유금	업유금	통합안기재정화
체육진흥기금	90,594	1,095				13,905		75,594
지역개발기금	61,286	43,021				18,265		
관광마이스육성 진흥기금	3,998					1,998		2,000
고향사랑기금	156					156		
합계	977,761	180,891	51	0	175,100	38,953	582,764	
예치비율	100%	18.50%	0.01%	0%	17.91%	3.98%	59.60%	

나) 개선 및 권고사항

투자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문화진흥기금 등의 경우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금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비교하여 금리가 유리한 상품으로 가입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기금 잔액 불부합 현황

가)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원)

구 분	결 산 액	금융기관잔액	차 액	비 고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84,397,015,870	20,729,735,920	63,667,279,950	
지 역 개 발 기 금	61,286,004,177	0	61,286,004,177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1,216,887,960	1,216,954,680	66,720	
환 경 보 전 기 금	18,672,657,660	13,168,000,000	5,504,657,660	

기금결산서 작성 시에는 연도 중 명확한 수입과 지출금액에 근거한 연도 말 잔액을 산출하여 결산하고, 그 산출금액과 합치하는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위 현황에서와 같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외 3건은 결산액과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서상 금액이 상이합니다.

불부합 사유를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은 2024년 1월 2일자 기한 도래 등에 따른 부득이한 지출이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의 폐기물처리업체 수수료 입금, 환경보전기금의 부산지속 가능발전목표사업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이는 업무추진 과정상 행정절차 이행의 착오로 인한 결과입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결산 시 회계연도 중 기금의 설치·통합·변경·폐지 등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적기에 수행하고 부득이하게 불부합 사유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도 말 기준 결산 금액과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서상 금액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1)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사항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철도법 및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의 2023회계연도 발행승인액은 100,000백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00,138백만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은행은 채권발행 한도 조정 시 한도 사용 금액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전산 입력함에 따라 발행 승인액을 초과하여 도시철도채권이 발행함에 따른 것입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지방재정법 제11조 3항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는 협의 또는 승인 없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지방채의 공공 자금 차입 패널티 검토 등 재정상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채권 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과의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방채 발행 절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1) 성과지표 달성현황

가)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 2제 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3회계연도의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을 세웠으며, 33개(전년도 33)의 전략목표 241개(전년도 238)의 정책사업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241개의 정책사업목표에 460개(전년도 452)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성과달성도를 총괄하면 달성 367건(전년도 360), 초과달성 57건(전년도 58), 미달성 36건(전년도 34)으로 요약됩니다. 미달성한 성과를 일부 보고한 부서 가운데는 전년대비 정책사업 결산액이 증가한 실, 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획관, 시민안전실,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계획국, 건축주택국, 문화체육국, 관광마이스국,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 행정자치국, 2030엑스포추진본부, 환경물정책실, 해양농수산국, 낙동강관리본부입니다.

전체 33개의 실국 중 성과목표에 미달성이 있는 실국은 21개이며 이들 대부분 지난년도 미달성 성과목표가 있었던 실국입니다.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과계획의 적정성 검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부족하며 정책사업과 재정지출의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도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정책사업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1)성과지표가 당해 정책사업목표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2)지속적,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측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3)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사항으로 성과지표가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한 결과 실제 사용되는 지표가 전체사업에서 극히 일부의 성과에 불과하여 대표성이 없는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특별한 노력 없이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다수 발견되었고, 작년에 이미 초과 달성하였으나 당기 목표 수준을 전기수준으로 과소하게 설정하여 초과 달성한 부분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이하 “작성 기준”이라 함)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여 안이한 목표설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정책사업목표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국 정책사업목표 중 오페라하우스 및 부산 국제아트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으나, 성과지표 상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공정률 등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오페라 전문인력 공연개최, 신규 공연장 브랜드 개발 홍보 횟수 등 건립 등 공사와 무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측정방식이 성과지표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의 성과지표 중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용지 확보의 측정방식은 분할납부금 지급률로 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을 기한 내에 모두 지급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지급률이 100%가 되며, 만약 10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산편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용지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목표하는 용지면적 대비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측정방식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달성”으로 보고한 사업 가운데는 목표치 설정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치로 설정한 경우로 도시계획국은 합리적인 도시계획 결정 및 관리(회) 성과지표의 경우 측정방식이 도시계획(공동)위원회 개최실적이며, 2022년도 목표가 15회이고 실적이 30회인 상황에서, 2023년도에도 목표를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15회로 설정한 후 실적을 30회를 달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달성률을 보인 점은 아쉬움이 있으며, 교통국의 경우에도 불법자동차 단속 건수 또한 전년도 달성율이 236%인 상황에서 2023년도 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크게 과소 설정하여 당해연도 달성률이 308%에 이르는 등 목표치를 설정할 때 과거 실적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② 성과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성과실적치를 검토하여 본 결과 목표치와 실적치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교통국의 성과지표 중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개발’의 경우 측정방식이 공정률이며 목표와 실적 모두 75%로 100%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상역 광역환승센터의 경우 2023년도 예산 금액이 117억원이고 2023년도 결산금액이 59억원으로 예산대비 사용금액이 50.5%에 불과합니다.

공정률 목표를 달성한 상황에서 예산과 결산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는 것은 목표 공정률 자체가 과소 설정되었을 수도 있으며, 목표 공정률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다면 달성률이 75%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과 목표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과 전년도 실적치와 동일하게 당해 실적치가 표시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실적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실적의 집계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마이스국의 ‘해양레포츠 대중화 체험인원(명)’ 성과지표의 경우 측정방식이 해양레포츠 행사(참여)인원이나, 2022년도와 2023년도 성과치가 20,000명, 21,000명으로 1,000명 단위로 표시되어 인원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 시 조사 주체, 설문 대상, 설문 항목, 표본 구성 등 조사 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근거 제시가 부족합니다. 또한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기본 자료가 없는 경우도 발견되어 사후에 적절히 확인이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 초과달성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시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해야 하며, 원인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원인 관계를 확인한 결과 원인이 적절하게 분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표1〉 성과지표 달성 현황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실 국 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 사 업 목 표		성 과 달 성 도			결 산 액	전 결 년 산 도액	비 교 증 감
		개 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33	241	460	57	367	36	15,136,806	15,155,890	△19,084
시 의 회 사 무 처	1	1	3	1	2	0	21,782	18,798	2,984
감 사 위 원 회	1	2	6	1	5	0	835	737	98
자 치 경 찰 위 원 회	1	2	6	0	6	0	12,210	10,693	1,517
대 변 인	1	4	4	0	4	0	18,286	15,547	2,739
성비위근절추진단	1	1	1	0	1	0	381	353	28
기 획 관	1	7	13	1	11	1	23,083	19,511	3,572
재 정 관	1	5	10	1	8	1	1,766,767	1,983,283	△216,516
시 민 안 전 실	1	6	13	1	11	1	184,993	173,741	11,252
시 민 건 강 국	1	5	12	1	11	0	200,864	340,438	△139,573
도 시 균 형 발 전 실	1	9	14	4	8	2	241,639	241,121	518
도 시 계 획 국	1	9	21	3	17	1	596,386	468,499	127,887
건 축 주 택 국	1	5	11	1	9	1	437,462	352,808	84,654
교 통 국	1	17	24	3	19	2	1,599,866	1,753,016	△153,150
문 화 체 육 국	1	12	31	3	26	2	464,814	410,290	54,524
관 광 마 이 스 국	1	9	15	2	12	1	89,790	84,523	5,267
사 회 복 지 국	1	6	11	3	7	1	5,128,676	4,861,412	267,264
여 성 가 족 국	1	11	26	5	17	4	1,103,480	1,039,470	64,010
행 정 자 치 국	1	12	22	4	16	2	199,224	174,160	25,064
금융창업정책관	1	4	8	4	3	1	45,681	56,239	△10,558

실 국 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 사 업 목 표		성 과 달 성 도			결 산 액	전 결 년 산 도액	비 교 증 감
		개 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디지털경제혁신실	1	14	25	6	18	1	278,728	422,655	△143,927
미 래 산 업 국	1	12	20	3	16	1	161,359	246,665	△85,306
청 년 산 학 국	1	12	17	1	13	3	1,056,492	1,073,397	△16,905
2030엑스포추진본부	1	7	16	0	15	1	52,365	33,391	18,974
신 공 항 추 진 본 부	1	2	3	2	1	0	2,351	6,251	△3,900
환 경 물 정 책 실	1	22	33	2	26	5	386,293	371,790	14,503
해 양 농 수 산 국	1	16	33	3	28	2	174,348	173,138	1,210
소 방 재 난 본 부	1	21	45	1	44	0	819,766	757,650	62,116
인 재 개 발 원	1	1	2	0	2	0	8,153	7,986	167
보 건 환 경 연 구 원	1	1	3	0	3	0	20,008	20,502	△494
농 업 기 술 센 터	1	1	3	0	3	0	6,110	6,290	△180
건 설 본 부	1	1	2	0	2	0	10,876	10,475	401
낙 동 강 관 리 본 부	1	2	5	1	3	1	23,628	20,230	3,398
부울경특별자치단체 합 동 사 무 국	1	2	2	0	0	2	107	829	△722

2) 개선 및 권고사항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과계획단계에서부터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 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작성 기준”은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위사업과의 관계에서 대표성은 물론 예산의 크기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설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성과목표와 무관한 지표가 설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관광마이스국의 경우 정책사업목표 중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해양 레저관광 경쟁력을 강화한다’의 경우 주요 내용이 크루즈 마리나 산업 육성 지원이며 예산 또한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이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으므로 다음연도에는 마리나비즈센터 관련 성과지표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를 사용할 때는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족도 설문조사 시 표본 선정이 모집단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조사가 설계되어야 하며 설문 조사자는 객관성을 보유한 자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조사 설계에도 불구하고 표본에 한계가 있다면, 조사 결과를 성과달성도 측정에 사용할 때 상응하는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나 중장기 계획, 유사 사업, 전국수준에 비추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는 목표치 설정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실적치를 목표치만큼 표시하고, 차후년도에도 유사한 목표치만큼만 잡아 전기 대비 안정적으로 증가되도록 하는 관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실국의 성과지표 자체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실국에서는 성과지표의 변경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결정될 수도 있으나, 각 실국에서는 연도별로 새로운 이슈와 업무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6.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중 용익물권과 보증금 채권관리

가) 현황 및 문제점

〈표1〉 보증금 채권 현황

소 유 자	소 재 지	면 적 (㎡)	보증금 금액 (천원)	운영시설명	관리부서	관리설정 사항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연제구 중앙대로 1000	3,513.74	1,964,239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설본부	미설정
오동수	연제구 거제대로 214, 오대빌딩 4층	173.68	180,000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 지원센터	노인 복지과	전세권
이필숙	금정구 서부로 40(서동)	217	110,000	금정희망의집	복지 정책과	전세권
이필숙	금정구 서부로 40(서동)	217	200,000	금정희망의집	복지 정책과	전세권
이필숙	금정구 서부로 40(서동)	217	20,000	금정희망의집	복지 정책과	전세권
최민수	수영구 연수로 249번길 12-18	97.85	100,000	수영구 푸드마켓	복지 정책과	전세권
김윤연	남구 못골로 53번길 12-20	96.63	100,000	남구 푸드마켓	복지 정책과	전세권
한태희	사상구 사상로 196	1,134.10	1,792,000	사상여성인력 개발센터	여성 가족과	근저당권
(주)KT	사하구 낙동대로 319	1,883.45	1,700,000	사하여성인력 개발센터	여성 가족과	근저당권
조창호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양정동)	283.25	50,000	부산노동 권익센터	일자리 노동과	미설정

소유자	소재지	면적 (㎡)	보증금 금액 (천원)	운영시설명	관리부서	관리설정 사항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8층	1,822.96	727,914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 행정과	미설정
조용제	연제구 연산5동 1331-13, 세영빌딩	148	70,000	바르게살기 운동부산 광역시협의회 사무처	자치분권과	전세권
코리아디엔씨 주식회사 연산지점	연제구 연산동 701-7, 8층	319.13	50,000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자치분권과	미설정
김정순 (조창호)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 4층	283	200,000	부산시장애인 종합복지관 분관	장애인 복지과	전세권
이세열	부산진구 거제대로 16-4, 4층	162	50,000	부산정신 보건가족협회	장애인 복지과	전세권
박외숙	부산진구 전포동 15-2번지 일원 e편한세상시민공원 104동 1103호	107.8681	560,000	청사관사 (아파트)	총무과	전세권

용익물권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것을 내용으로 한 물권(사용권·이용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전세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입니다.

보증금 채권은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채권을 말하며, 이에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청사 건물 임차 보증금, 숙소 전세보증금, 전화 가입 보증금, 기타 선수금 등이 해당하며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보증금 채권에서 제외하며 공유재산(용익물권)으로 별도 관리합니다. 보증금 채권은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용하다 계약기간 도래 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표1>와 같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보증금을 용익물권에 포함하여 보증금 채권과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보증금 채권에서 제외하고 공유재산 중 용익물권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증금 채권을 확인한 결과,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제대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서 용익물권에는 누락되어 있고, 보증금 채권에는 포함되어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물권소재지로 관리가 되는 채권의 경우, 자료 비교 및 확인을 위해서라도 소재지부터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혼재되어 있어 자료 확인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토지 등기에 대한 사항이 지번 주소로 관리가 되더라도 다른 자료상에서 도로명 주소만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면, 공유재산의 용익물권 관리 시 도로명 주소가 기재되도록 안내가 되어야겠습니다.

전세권이 추가로 설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여 용익물권에 포함이 되도록 각 부서에서는 매뉴얼 정리 및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채권관리 부서에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채권의 현황을 확인하여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용익물권에 반영이 되도록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익물권 관리 부서에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물권의 현황을 확인하여 전세권이 미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익물권에서 제외하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익물권에 포함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성인지 결산에 관한 사항

1)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성평등 효과분석 미흡

가) 현황 및 문제점

〈표1〉 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사업수	집행액	사업수	집행액	사업수	집행액	사업수	집행액
174	613,657	57	145,582	63	234,674	54	233,401

〈표2〉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목표수(A)	목표달성 지표수(B)	목표 미달성 지표	목표 달성률(B/A)
184	117	67	63.59%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기반 구축과 정책의 성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은 있지만, 성인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에너지산업과의 330백만원은 반도체산업 육성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에 해당하지만 이를 성인지예산에 포함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이 가장 낮은 66.04%로 산출되었습니다.

해양레저관광과의 '마리나 산업 육성 및 지원(일반회계)'사업의 경우 성별 영향평가사업으로 분류되어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박 관리, 수상 구조 등 관련 산업의 특성상 남성 지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목표치 달성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이 성인지 대상 사업에 확정이 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발생하는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자동적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 목표 및 달성 지표에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를 얻게 됩니다.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관에서는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급변하는 산업의 상황에 맞춰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사업을 집행해야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 시 사업 대상 및 수혜 대상, 목표 설정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서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